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5

제출일자 : 2006. 2. 9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○ 공무원 여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2006. 1. 12「공무원여비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

○ 이에 관련 조례의 조항을 정비코자 함

2. 주요골자

○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의 단가를 조정함(안 제4조)

-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 : 1만원 → 2만원
- 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자 : 5천원 → 1만원
- 관용차량 이용자 및 운전원 : 5천원을 감하여 지급 → 1만원을 감하여 지급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공무원법」제46조,「공무원여비규정」제18조제1항(대통령령 제18673호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중 "1만원"을 "2만원"으로, "5천원"을 "1만원"으로 하고,
동조제2항중 "5천원"을 "1만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,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.	**제4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)** ①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2만원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1만원———
②"「부산광역시 사하구 관용차량 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"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.	②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 1만원——— ———
③(생략)	③(현행과 같음)